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출생연도 구간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중전의 명목소득대체율 인하계획 유지 및 자동조정장치 도입〉
■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951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출생연도 구간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및 종전의 명목소득대체율 인하계획 유지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10
다. 관계 기관 의견	12
2. 자동조정장치 도입	13
가. 개정안의 내용	13
나. 검토의견	16
다. 관계 기관 의견	20

I. 개요

1.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95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추경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9. 12.
- (3) 회 부 일 : 2025. 9. 1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등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일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 과제로 남아있음.

2026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p씩 인상하여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하는 한편, 명목소득대체율 또한 43%로 인상하도록 함. 그러나 보험료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득대체율 인상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악영향을 주는 조치임.

또한,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재정,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장래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험료율 인상에 대하여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재정 계산 결과 70년 이내에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년도에 급여 지출액이 연금보험료 수입액보다 많은 경우 가입자 감소율 및 평균수명 증가율을 반영하여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가입자의 수익비가 1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그 하한을 두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부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출생연도 구간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및 종전의 명목소득대체율 인하계획 유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2025년 4월 공포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33년부터 13%로 적용될 보험료율과 관련하여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4개 집단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간 0.25~1%p로 차등화하고,

같은 법에 따라 2026년부터 43%로 적용될 명목소득대체율(2025년 현재 41.5%)을 종전과 같이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41%와 40.5%로 하고, 2028년 이후로는 40%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	제51조(기본연금액) ① ----- ----- -----1천200----- -----, ----- ----- ----- -----

현행	개정안
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각 연도별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18. (생략) <신설> <신설> 제34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 ② (생략) ③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가입기간분에 대한 제51조제1항 본문의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부칙 제20조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특례) -----2027년----- ----- ----- ----- ----- -----. 1. ~ 18. (현행과 같음) 19. 2026년은 1천분의 1천230 20. 2027년은 1천분의 1천215 제34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2027년----- ----- ----- ----- ----- ----- -----.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관

현행	개정안
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2. 2027년은 1천분의 100 3. 2028년은 1천분의 105 4. 2029년은 1천분의 110 5. 2030년은 1천분의 115 6. 2031년은 1천분의 120 7. 2032년은 1천분의 125	한 특례) ① 1966년생부터 1975년생까지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50 2. 2027년은 1천분의 55 3. 2028년은 1천분의 60 ② 1976년생부터 1985년생까지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③ 1986년생부터 1995년생까지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6년까지는

현행	개정안
	<u>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u> <u>1. 2026년은 10만분의 4,665</u> <u>2. 2027년은 10만분의 4,830</u> <u>3. 2028년은 10만분의 4,995</u> <u>4. 2029년은 10만분의 5,160</u> <u>5. 2030년은 10만분의 5,325</u> <u>6. 2031년은 10만분의 5,490</u> <u>7. 2032년은 10만분의 5,655</u> <u>8. 2033년은 10만분의 5,820</u> <u>9. 2034년은 10만분의 5,985</u> <u>10. 2035년은 10만분의 6,150</u> <u>11. 2036년은 10만분의 6,315</u> <u>④ 1996년생부터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40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u> <u>1. 2026년은 10만분의 4,625</u> <u>2. 2027년은 10만분의 4,750</u> <u>3. 2028년은 10만분의 4,875</u> <u>4. 2029년은 10만분의 5,000</u> <u>5. 2030년은 10만분의 5,125</u> <u>6. 2031년은 10만분의 5,250</u> <u>7. 2032년은 10만분의 5,375</u> <u>8. 2033년은 10만분의 5,500</u> <u>9. 2034년은 10만분의 5,625</u> <u>10. 2035년은 10만분의 5,750</u>

현행	개정안
<신설>	11. 2036년은 10만분의 5,875 12. 2037년은 10만분의 6,000 13. 2038년은 10만분의 6,125 14. 2039년은 10만분의 6,250 15. 2040년은 10만분의 6,375 제4조의2(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특례) ① 1966년생부터 1975년생까지의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100 2. 2027년은 1천분의 110 3. 2028년은 1천분의 120 ② 1976년생부터 1985년생까지의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2. 2027년은 1천분의 100 3. 2028년은 1천분의 105 4. 2029년은 1천분의 110 5. 2030년은 1천분의 115 6. 2031년은 1천분의 120 7. 2032년은 1천분의 125

현행	개정안
	③ 1986년생부터 1995년생까지의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6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933 2. 2027년은 1만분의 966 3. 2028년은 1만분의 999 4. 2029년은 1만분의 1,032 5. 2030년은 1만분의 1,065 6. 2031년은 1만분의 1,098 7. 2032년은 1만분의 1,131 8. 2033년은 1만분의 1,164 9. 2034년은 1만분의 1,197 10. 2035년은 1만분의 1,230 11. 2036년은 1만분의 1,263 ④ 1996년생부터의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40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925 2. 2027년은 1만분의 950 3. 2028년은 1만분의 975 4. 2029년은 1만분의 1,000 5. 2030년은 1만분의 1,025 6. 2031년은 1만분의 1,050

현행	개정안
<u><신 설></u>	7. 2032년은 1만분의 1,075 8. 2033년은 1만분의 1,100 9. 2034년은 1만분의 1,125 10. 2035년은 1만분의 1,150 11. 2036년은 1만분의 1,175 12. 2037년은 1만분의 1,200 13. 2038년은 1만분의 1,225 14. 2039년은 1만분의 1,250 15. 2040년은 1만분의 1,275 <u>제4조의3(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특례)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u> 1. 2026년은 1천분의 100 2. 2027년은 1천분의 110 3. 2028년은 1천분의 1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나눈 구간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4~16년간으로 차등화함으로써 지난 두 차례의 연금개혁¹⁾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기간이 긴 청년세대가 불리하게 되는 측면을 완화하고,

2025년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인상계획을 2007년 당시 60%였던 명목소득대체율을 일시에 10%p 인하하여 2008년에는 50%로 적용하고, 그때부터 매년 0.5%p씩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8년부터 40%로 적용하기로 한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종전의 인하계획으로 대체함으로써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 데 따른 재정안정화 효과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당초 정부는 2024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하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할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험료율을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4~16년간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와 법안심사 과정에서 가입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것이 가입자의 소득 등 경제적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가 일반적인 사회보험제도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와 각 구간의 경계 전·후로

1) 제1차 연금개혁(1998)에서는 명목소득대체율을 종전의 70%에서 60%로 10%p 일시 인하하였고, 제2차 연금개혁(2007)에서는 명목소득대체율을 종전의 60%에서 50%로 10%p 일시 인하한 다음 매년 0.5%p씩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함으로써 2028년부터 40%가 적용되도록 하였음.

출생한 가입자 간에 생애 보험료 총 부담이 역전되는 점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방안 >

구분	50대	40대	30대	20대
인상 속도 (%p, 연간)	1.0 (4년간 인상)	0.5 (8년간 인상)	0.33 (12년간 인상)	0.25 (16년간 인상)

자료: 보건복지부('24. 9.), 「연금개혁 추진계획」.

□ 또한,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2. 20.)에서 정부는 각 구간의 경계 전·후로 출생한 가입자 간에 생애 보험료 총 부담이 역전되지 아니하도록 한 보완방안을 제시하였으나,²⁾ 이에 대하여는 국민적 수용성과 관련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가운데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외에 정치·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여부 등의 다른 의제가 우선 논의된 경과에 따라 2025년 3월 20일 국회의장이 주재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을 각각 인상하고 군복무·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가 성사된 가운데,

같은 날 우리 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9191호)이 가결되어 2025년 4월 2일 법률 제20903호로 공포되었고, 202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2) 당시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차등화되는 구간을 세분화(4→8개)함으로써 각 구간의 경계 전·후로 출생한 가입자 간 생애 보험료 총 부담이 역전되지 아니하도록 보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 및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하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고, 이러한 논의를 거쳐 지난 3월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 시행 전에 다시 이를 개정하려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고려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차등화되면 세대 간 갈등이 조장될 수 있고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점과 사회적으로 합의로 통과된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명목소득대체율을 재조정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자동조정장치 도입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 계산 결과 그로부터 70년 이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소진이 예상되면서 전년도의 급여 지출액이 연금보험료 수입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전전년도 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의 가입자 감소율의 평균값과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의 평균수명 증가율의 평균값을 제한 비율만큼만 기본연금액이 조정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 AAM)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기본연금액) ①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신설>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기본연금액) ① ----- ----- -----1천200----- -----.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현행	개정안
	재정 계산과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결과 재정 계산을 수행한 시점으로부터 70년 이내에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년도의 제49조에 따른 급여 지출액이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금보험료 수입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연금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뺀 값(다만, 해당 값이 1만분의 31 미만일 때에는 1만분의 31로 본다)을 기준으로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비율 가. 연금수급 4년 전 연도와 대비한 3년 전 연도의 가입자 감소율 나. 연금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2년 전 연도의 가입자 감소율 다. 연금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가입자 감소율 2.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비율 가. 연금수급 4년 전 연도와 대비한 3년 전 연도의 평균수명 증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가을 나. 연금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2년 전 연도의 평균수명 증가율 다. 연금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평균수명 증가율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연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조에 따른 재정계산과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기본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여주기 위하여 매년 전년도에 대비 전년도 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본연금액이 조정되도록 하고 있음.

- 예컨대, 전년도 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인 n년도의 기본연금액이 100만원인 수급권자 甲의 (n+1)년도 기본연금액은 100만원의 3%인 3만원을 가산한 103만원이 됨.

□ 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제2항3)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 계산의 결과, 그로부터 70년 이내에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년도의 급여 지출액이 연금보험료 수입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전전년도 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의 가입자 감소율의 평균값과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의 평균수명 증가율의 평균값을 제한 비율만큼만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AAM)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앞에 제시한 甲의 사례에 개정안에 따른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된 경우를 가정하면, (n-1)년도 기준 최근 3년간의 가입자 감소율

3)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및 평균수명 증가율의 평균값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3%)에서 뺀 비율(그 비율이 0.31%보다 작으면 0.31%⁴⁾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기본연금액이 인상되므로 甲의 (n+1)년도 기본연금액은 103만원 미만이 됨.

- 공적연금에 적용되는 자동조정장치는 물가(임금)상승률 외의 거시경제적·인구통계적 변화 등에 따라 공적연금제도의 모수가 자동으로 조정되게끔 사전에 설정한 장치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4개국에서 공적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였으며, 조정 대상이 되는 모수가 보험료율인지, 연금급여액인지, 수급개시연령인지 등에 따라 작동 기제는 서로 다른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가입자 수나 평균수명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라 급여액의 인상 속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매년 법률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도 재정건전성에 관한 우려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정치·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민연금은 전 국민 의무가입을 전제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의 신뢰 확보가 요구되고,

대다수 국민의 은퇴 후 노후자금의 원천으로서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개정안은 기본연금액의 전년 대비 변동률이 전년도 기준 최

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본연금액의 명목 가치가 전년 대비 0.31% 이상 인상되는 경우 평균 기대수익비가 1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음.

근 3년간의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의 평균값에 따라 자동 조정되도록 하려는 것인데,

현행법은 기본연금액 외에도 부양가족연금액(제52조), 연금액 최고 한도(제53조) 및 연기연금액(제62조)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⁵⁾ 개정안에 따른 자동조정장치를 부양가족연금액, 연금액 최고한도 및 연기연금액에 대하여도 적용할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정부는 2024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인구·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보건복지부는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2. 20.)에서 재정 계산을 실시한 다음 연도부터 5년 이내에 급여 지출액이 연금보험료 수입액을 초과하는 연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여명 증가율을 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되, 그 조정

5) 「국민연금법」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53조(연금액의 최고한도) 연금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1.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연금 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조정한다)을 평균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준하여 조정한 금액
2.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연금 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조정한다)을 평균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준하여 조정한 금액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② 제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가 된 경우의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
2.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금액.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은 재정 계산을 실시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적용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자동조정장치는 연금급여액의 삭감을 전제한 것으로 노후소득 보장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어 2025년 4월 법률 제 20903호로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제22대 국회에 설치·구성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2025. 4. 30.)에서 보건복지부는 노후소득과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발동 요건·시기·형식·절차 등을 포함한 자동조정장치에 관한 논의를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필요성과 함께 ‘재정 안정화 조치’ 의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음.

- 참고로, 재정 계산을 수행한 시점으로부터 70년 동안 국민연금기금을 유지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전년도의 전전년도 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을 뺀 비율만큼만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기제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려는 내용 등으로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25호)이 우리 위원회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재정 지원 등의 다양한 재정 안정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6